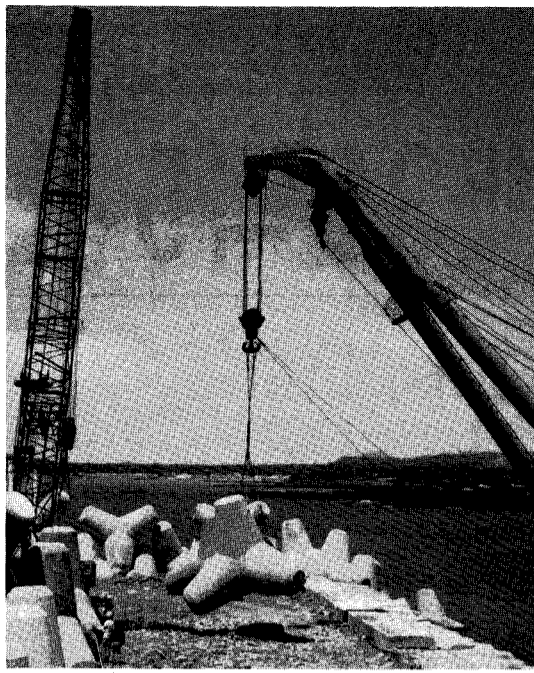




명년漁港예산

국회增額을期待한다

94년도 정부 예산이 대체로 43조3천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보다 13.8%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에는 5조2천5백억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편 수산부 예산의 증액에 대해 10.7% 늘어난 2천9백88억원 안팎, 이 가운데 어항 개발예산 예산인 역시 올해보다 12.5% 증액된 700억원 안팎이 늘었다. 6백99억5천만원 정도는 편성된 것이므로 늘었다고 있다.



2001년까지 기본시설 완료한다는 분홍빛 청사진 이미 물거품

초점

내년올라도 제자리걸음

일궈 상상수출에 현혹되지 마라

이름아질 때 이를 피하고 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야 수산업 발전을 논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두의 수처에서 볼 수 있듯이 어항부담 예산이 겨우 20%를 조금 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어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정부가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정부가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정부가 이것만이 아니다.

어항인들은 그래도 국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것도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안(案)이 제시했던 예산, 다시 말해 정부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이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면 6백98억8천4백만원이었다.

劣化콘크리트 보수계획

이스퍼트 시스템

日東洋건설개발

일본 日東洋건설(이하) 해양 구조물의 유지보수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일궈콘리트보수계획의 이스퍼트 시스템을 일본최고의 공중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일 반토목기술자가 간단히 보수설계를 하고 지름까지 문제가 됐던 전문가 기술자의 부추현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따라 日東洋건설(이하) 이스퍼트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예상되는 어항관리구조물의 유지보수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보수계획의 이스퍼트 시스템은 콘크리트에서 부재별 수치에 의한 '제어' '판정' '보수' '관리'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관리비목이

수계획실체를 신속히 다 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스템은 크게 △부재 재선정 △표준유압 단면 복구재용 보수공법의 선 정 △주입재 단면복구재 등 보수재용의 선정 △보수법위의 선정 △보수공법별 재료별 보수수량선 정 등의 항목을 무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계획실체의 결과가 통일된 정밀도 및 수준을 갖춘 판단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 신속 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日東洋건설(이하) 이스퍼트 시스템에 따라 어항관리 구조물 보수공사에 도입이 되고, 국가기관인 공사물 품제조업 등의 계약체 결한 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회계규칙 선금 지급비율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선금지급비율이 △1백만원이하 20% △20만원이상 1백만원이하 25% △20만원미만의 30%로 각

각 상향 조정됐다.

건설부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제정으로 내년부터 감리체계가 시공감리에서 전면책임감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획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감리대기 기준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기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잉기술용역대가 기준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을 충족해 오던 건설공사감리대기 기준을 새로 제정, 감리대기를 50% 이상 공사에 대해 현행 1%수준에서 최고 4.78%까지 올렸다.

감리비기준확정 내년1월1일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공공 건설공사 감리비용의 대가공비가 4%선으로 대폭 상향조정되며 정부

감리비목이

감리비목이

감리비목이

Advertisement for '동정' (Dongjeong) featuring a portrait of Lee Gyeon-sung (李義秀 수산청장) and text about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goals.

Advertisement for '동정' (Dongjeong) featuring a portrait of Lee Gyeon-sung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and text about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goals.

Advertisement for '동정' (Dongjeong) featuring a portrait of Kim Seung-rye (김생려 회장) and text about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goals.

# 해외선진어항시찰10월6일登程

각 시·도 수산공무원·일선수협직원등 27명 참가

## 새技術의히고전문도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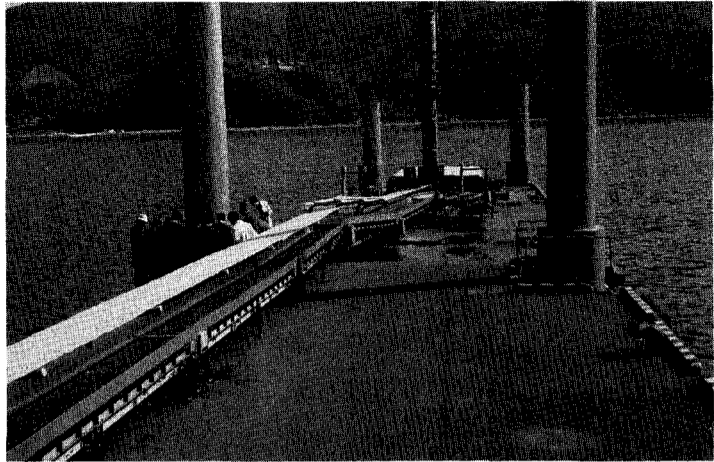
日、濠洲、뉴질랜드등 3국순방

한국어항협회는 제5차 해외선진어항시찰 참가자 신청접수를 27명으로 마감했다.

이번 해외선진어항시찰은 과거와는 달리 오는 10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8박9일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의 세계적인 주요 어항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항은 ▲일본 (목) 8박9일동안 10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8박9일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의 세계적인 주요 어항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항은 ▲일본 (목) 8박9일동안 10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8박9일동안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의 세계적인 주요 어항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 제5차 해외선진어항 시찰단은 10월6일 부터 8박9일 동안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어항을 시찰할 계획이다.

## 직공비미만 낙찰공사 발주기관서 특별관리

부조감리비 10%범위내 전용키로

정부는 공공시설공사 발주기관을 위해 직공비 미비로 낙찰공사에 대해 준공검사가 끝날때까 지 해당 발주기관에서 시공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감리회사와 설계사, 발주처공무원으로 감리단을 구성, 특별관리를 실시하길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감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 10%범 위내에서 공사비를 감리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 시설공사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 지난 2월 22일 이후 지난달말까지 발주 집행된 최저가낙찰 제 대상공사 1백91건가운데 81.15%인 1백55건이 예정가격대비 85%미 만의 저가로 낙찰됐으며, 직공비 미비로 낙찰 공사 1백55건을 공공별 로 보면 토목 50건, 건축 52건, 전기 52건, 통신 11건, 전문 6건 등이며 발주기관별로는 건설부 32건, 지자체발주 39건, 교육청 27건, 철도청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 94년어항예산 2천3백86억원 9차장기계획시발

어항정비·연안지역고도이용

일본 수산청(수산성) 최근 각 의를 거쳐, 94년도 예산 개산요구서를 대정선의 제출하였다.

요구서에 따르면 일반 회계의 개산요구 총액은 3천7백91억1천9백만 원(전년도 대비 2.9% 증액) 중 비공영 부문은 1천1백6억7천6백만 원(전년도 대비 1.8% 증액) 공공부문은 2천6백84억4천3백만 원(3.4% 증액)이 요구된다고 있다.

이 신장률이 반영된 수의의 대안하기 시작한 해안과 어항의 정비에 목

수산청 전체의 신장률 1.8%(비공영부문 1.9%, 공공부문 3.1%)를 상회하고 있고, 이의 서가용한 환경의에 대해 있는 수산업 정책의 진보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어항정비예산은 2천3백86억3천만 원(전년도 대비 1.0%증액)이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표모하기 때문에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본 구주지역의 佐賀어항, 宇島어항, 呼子어항 과, 어항정비예산에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 대 본항 그리고 세계적인 미항 이면서 첨단시설을 갖춘 호주의 시드니항 등의 항 세와 어항정비기술 현황, 관리상태, 수산연건 및 현 황에 대해서 각각 어항관 련 기관단체의 공식안내 를 받아 체계적으로 시찰 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하 는 해외선진어항시찰은 새로운 정세에 부응할 어 항계획의 수립, 어항개발 및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어항관리에 크 게 기여해 오고 있다.

제8회 해외선진어항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원완씨(전라남도 여천군청 수산과)  
△이동완씨(전라남도 영광군청 수산과)  
△박찬우씨(경상북도 청송군청 수산과)  
△조유남씨(경상북도 영일군청 수산과)  
△김득조씨(경상남도 고성군청 수산과)  
△신삼용씨(경상남도 진해시청 수산과)  
△이천석씨(경상남도 창녕군청 수산과)  
△김규태씨(경상남도 양산시청 동부출장소)  
△원희씨(경상남도 거제군청 수산과)  
△황금주씨(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  
△이희윤씨(주식회사 유일종합기술단 사장)  
△최의환씨(주식회사 대유건설 사장)  
△임정준씨(광명중기 대표)  
△김재철씨(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업무이사)  
△강신형씨(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  
△서재성씨(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함안부차장)  
△서기덕씨(주식회사 아남건설 현장소장)  
△정재석씨(주식회사 무등건설)  
△구연각씨(무산시 수산연합동조합 상무)  
△김종태씨(무산시 수산연합동조합 과장)  
△이성우씨(매일경제신문 사기자)  
△최영수씨(한국어항협회 업무부장)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정비 예산은 「어항법」의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어항법」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9차 어항 정비 장기계획」 「제4차 연안어항개발장 비계획」 「어항정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 株式會社 唯一綜合技術團

**主要業務**

- 港灣의 開發조사, 整備, 計劃, 設計
  - 一般港, 貿易港, 工業港, 漁港
  - 防波堤, 防潮堤, 浚渫工事
  - 各種 港灣施設, 海洋構造物
  - 港灣施設의 安全診斷
- 各種土木工事의 計劃, 設計
  - 調査測量(陸上 및 水深)
  - 上, 下水道
  - 地域 및 都市計劃(工團造成)
  - 道路 및 空港
  - 各種運動施設
- 工事施工監理
- 環境影響評價代行

서울特別市麻浦區東橋洞 174-13  
TEL (02) 336-1854, 324-8954, 338-5971  
(051) 441-1811~12  
FAX 338-7586

會長 李 炳 周  
技術士(上下水道)  
代表理事 李 義 允  
技術士(港灣及海岸)  
技術理事 孫 一 洙  
技術士(港灣及海岸)  
常任顧問 林 根 燮  
技術士(土木施工)

**業 種**

- 專門技術用役業(科技處 第3-13號)
  - 技術部門: 建設部門
  - 專門分野: 港灣及海岸, 上下水道, 地域 및 都市計劃, 道路及空港
- 一般測量業(建設部)
- 工事施工監理專門會社(建設部)
- 海外建設業(建設用役)(建設部)
- 環境影響評價代行業指定(環境處)
- 鑛區境界測量代行業(鑛業登錄事務所)

#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0]

## 製氷·貯氷施設

시설규모와 용지면적의 선정  
어획량이 정해지면 얼음 소요량을 산정  
하고 다음에 소요시설량을 구한다.

이 방법에는 빙부식과 전자동식이 있  
다.

· 빙부식 제빙시설  
빙부식제빙은 저빙시설과 같이 계획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빙시설능력은 일반적으로 다음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빙시설능력(톤/일) = 연간얼음소요량  
(=연간어획량) / (365 × 0.7) (단, 0.7은 가  
동률)

저빙시설능력은 어획량의 변동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30일정도의 것이 많은  
실정이다.

제빙시설, 저빙시설의 능력은 상호관련  
이 있으며, 특정시기에 어획량이 집중되  
는 어항에서는 위의 식보다 능력이 큰 제  
빙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빙능력을 낮게  
하는 방법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총

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빙부식의 경우 제빙, 저빙시설의 능력  
과 표준적인 건물면적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 <표1>에 나타나 있다.

· 전자동식 제빙시설  
전자동식 제빙시설은 빙부식과 다르며  
장기간의 저빙은 곤란하다.

따라서 제빙시설의 능력은 어획량이 많  
은 시기에 알맞도록 정한다.

저빙은 5일정도까지는 가능하므로 반  
드시 1일 최대의 얼음 소요량에 대응하는  
시설능력은 필요하지 않고 그 3분의2 정  
도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예를들면 1일최대 얼음소요량이 15톤정  
도되는 어항의 경우 제빙시설능력은 15 ×  
2 ÷ 3 = 10(톤/일)으로 된다.

따라서 저빙능력으로는 10 × 5 = 50톤의  
시설을 만들어 두면 1일 최대 소요량 15  
톤/일과 제빙시설능력 10톤/일의 부족분  
은 5톤/일 이므로 (50톤/일) ÷ (5톤/일) =  
10일로 된다.

이 1일최대소요량이 10일간 연속되어도  
대응한다고 보며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방식에 의해서 시설은 전자동식 제빙  
제빙시설의 개요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1  
층이 사무실, 2층이 저빙실, 3층이 제빙  
실인 구조가 일반적이다.

건물면적은 2층의 저빙실 면적에서 결  
정된다.

따라서 저빙능력을 크게하는 것은 용지  
비, 건조비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제빙능력을 크게 잡아서 저빙을 제빙능  
력의 3일정도로 하는 예가 많다.

빙부식이나 전자동식은 사람과 차량등  
의 움직임은 활발치 못하고 겨우 하팔소  
또는 타 지역으로 얼음을 운반하는 차량  
이 출입하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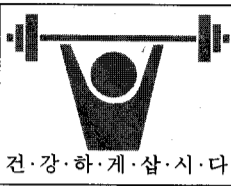
따라서 부지면적은 이러한 출입에 불편  
하지 않을 정도이면 된다.

건폐율(0.6~0.7)을 고려하여 소요시설  
용지 면적을 산출한다.

<표1> 빙부(氷缶)식 제빙시설의 능력과 건물면적

제빙능력(톤/일)		1	3	5	10	20	30	50	100
저빙고 수용량(톤)		60	180	300	600	1,100	1,500	2,000	3,000
건 물 면 적 (㎡)	제빙실	24.8	48.4	59.4	86.6	178.2	231.0	376.2	752.4
	저빙실	26.4	72.0	100.7	178.2	290.4	396.0	534.6	772.2
면 적 (㎡)	준비실	3.3	11.6	12.4	19.8	33.0	33.0	39.6	99.0
	기계실	-	23.1	33.0	49.5	79.2	66.0	89.1	138.6
면 적 (㎡)	배전실	-	-	-	-	-	-	19.8	33.0
	사무실	-	9.9	12.4	24.8	46.2	39.6	52.8	52.8
면 적 (㎡)	숙직실	-	-	-	-	-	26.4	36.3	62.7
	계	54.5	165.0	217.9	358.9	627.0	792.0	1,148.4	1,910.7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자칫 방심하다가도 원하지 않  
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기가  
쉽다.  
오랫동안 특별히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와 같은 원  
치않는 불청객이므로 고생하  
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감기는 기온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후두부위 이  
상의 호흡기 구조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기하  
다. 이것은 다시 부위에 따라



## 초가을 건강

### 일교차 심할때 감기조심

편도선염, 인두염, 후두염 등  
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임상증상은 코물, 기침,  
두통이 있다가 고열과 전신통  
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음식  
물을 삼키기가 곤란해지는 인  
두염 그리고 목이 쉬는 후두염  
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을 여러 개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  
통 대부분의 경우에 감기 치료  
는 증상에 따른 대응방법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균의 주  
한 이차 감염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  
용한다.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예방  
기 전에 적절한 감기를 치  
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을철에 흔한 질환으로서  
소아의 피부병 또한 배농을  
수행는 질환이다.  
가을철에 흔한 질환 중의 하  
나로 유년성 기흉이 있다.  
이 질환은 이유없이 갑자기 온  
몸이 저리다 아프고 가슴부  
위에 여러 개의 심한 통증이 있  
다.  
우울이 동반되고 열이 재발성  
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  
다.  
이 질환은 8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원인으로 추  
사키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며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많이 발  
생하는 질환이므로 증상에 따른  
대응방법이 있다.

## 生活경제

## 生活경제

# 과세 특례자로 불리할 때는 포기 가능

##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

**과세유형전환**  
○ 일반과세자가 어느 한해  
의 총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 900만원)에 미달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해  
의 제2과세기간(7.1~12.31)  
부터 과세특례자로 바뀐다.  
또 반대로 과세특례자가 어느  
한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역시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  
자로 유형이 변경된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개  
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  
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  
이 기준금액을 넘느냐로 과세  
유형이 판정된다.  
○ 과세특례자가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이상이 된 경우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  
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다.  
○ 휴업을 한 경우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사업기간의 공  
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  
정하고, 휴업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는 신규사업자와 같  
은 방법으로 판정하게 된다.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

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변경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  
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  
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  
여야 한다.  
통지는 과세유형변경에 따  
라 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주  
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통지  
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게 되  
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로 변경되는 경우는 준비를  
못하게 되므로 통지받은 기간  
은 그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  
고 그 다음 기간부터 일반과  
세자가 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가 과세  
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과  
세특례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 과세특례자가 되면 각종  
의무가 면제되는 하나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못하게 되  
고 매입세액의 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리한 것만  
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특례  
를 포기할 수 있다.  
과세특례의 포기는 과세특  
례신고서를 과세기간 개시 10  
일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는데 그로부터 3  
년간은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  
된다.  
**과세표준과 세액**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은 재화·용역의 공급금액이지  
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공  
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공급대가이다. 과세특례자  
들은 보통 부가가치세를 별도  
로 징수하지 않고 상품가액에  
포함시킨다.  
○ 세율과 납부세액  
대리·중개·위탁매매·도급의

경우는 3.5%, 그 이외의 경  
우는 2%가 세율이고, 납부세  
액은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간이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으며, 이를 신고시에 정부  
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5%  
상당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  
액에서 공제한다.  
○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  
부하는 경우는 발행금액 즉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  
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한다.  
**신고·납부**  
○ 예정신고 기간분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 납  
부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  
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  
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  
부한다. 고지기간은 1기분이  
4월1일~4월10일, 2기분은 10  
월1일~10월10일이고 고지받  
은 후 예정신고기간 안에 납  
부해야 한다.  
○ 확정신고·납부  
과세특례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2가지 서식으로 구분한  
확정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25  
일내(확정신고 기간)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  
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  
거  
(4) 세금계산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 신고시 첨부·제출서류  
확정신고서 제출시에는 (매  
입) 세금계산서, 영세율적용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